

보수규정

제정	2008.11.20	개정	2014.06.16
개정	2009.06.30	개정	2015.10.07
개정	2009.09.23	개정	2016.08.30
개정	2010.09.24	개정	2017.01.02
개정	2010.09.24	개정	2017.06.01
개정	2012.01.20	개정	2018.03.30
개정	2012.05.22	개정	2018.11.21
개정	2014.01.09	개정	2019.03.0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보수규정 개정) 보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연봉에 연봉조정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 직급별 연봉 한계액 내에서 대표이사가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결정한다.
3. "연봉조정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연봉 변동액으로서 전년도 연봉에 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액 총액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가 직원의 업무성과에 따라 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가급여"라 함은 <별표 2>에 의한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직책(대표이사 직무대행 포함) 또는 직급수당을 말한다.<개정 2018.11.21>
5.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연 금액을 12로 나눈 월정액을 말한다.<개정 2016.08.30.>

제5조(적용대상자) 연봉제는 상근임원, 일반직, 전문직 등 전체 상근 임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5.22.><개정 2014.01.09.><개정 2016.08.30.>

301 보수규정

제 2 장 연봉의 결정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의 결정) ① 연봉은 연1회 연봉계약에 의하여 개인별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 계약은 직원과 대표이사 간에 체결하며, 계약서 원본은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재단과 직원이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15.10.07.>

제7조(연봉의 결정방법) ① 당해년도 기본연봉은 전년도의 기본연봉과 연봉조정급을 합한 금액으로 대표이사가 정한다.

- ② 연봉조정급은 인사규정에 의한 전년도 개인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직원별 차등을 두고 결정하며, 개인별 지급률은 따로 정한다.

제8조(기본연봉 한계액) ① 직급별 기본연봉액의 한계액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별표 1>의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의 조정은 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율의 이내에서 조정하되, 조정시기는 인건비 변동 추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08.30.>

제9조(연봉의 지급) ① 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0일에 1회씩 지급한다.

- ② 연봉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0조(계산기간) 기본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신분변경시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 연봉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규임용시의 연봉결정은 <별표6> 연봉산정표 및 보수규정시행내규 <별표5> 경력환산기준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한다. 다만 경력환산 적용 시 인정 경력이 직급별 채용경력기준보다 낮을 때에는 직급별 채용경력기준을 최저 경력기준으로 적용한다.<개정 2015.10.07.><개정 2019.03.00>
2. 승진하는 경우의 연봉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규정의 연봉한계액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봉액을 조정한다. 조정된 연봉은 임용일로부터 지급한다.<개정 2012.5.22.>
3. 신규임용,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령 당월의 연봉액과 부가급여를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4.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하되, 부가급여는 실제 근무기간 해당분에 대하여 재단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결근자의 연봉) ①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 유급휴가 및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 일수에 대하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01 보수규정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연봉과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연봉 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의 4할을 지급한다.

②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징계처분자 등의 연봉) 인사규정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연봉공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연봉을 감액한다.

1. 징계기간 중 연봉은 그 기간 중 기본연봉의 50%를 감하여 지급한다.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를 감할 때에는 강등된 후의 보수를 기준으로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하며, 강등된 후의 보수는 강등전 기본연봉에서 10%를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강등된 직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09.10.>
2. 감봉기간 중 연봉은 그 기간 중 기본연봉의 10%를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05.22.>
3. 본인 및 타인의 연봉을 공개한 자는 기본연봉의 5%를 감하여 3개월간 지급한다.

제15조(파면 등이 취소된 자의 연봉) 직원에게 행한 징계에 의한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징계당시의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6조(휴직자의 연봉) ① 휴직기간 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3.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일시 고용된 경우와 다른 법률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발령일로부터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자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파견자의 연봉)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복무규정에 의해 교육훈련을 받는 직원의 연봉은 보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301 보수규정

제 3 장 부가급여

제18조(부가급여의 지급) 부가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성과급) ① 성과급은 서울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세부 지급방안은 대표이사 방침에 의한다.<개정 2014.01.09.>

② <삭제 2014.01.09.>

제 4 장 퇴 직 금

제20조(지급 시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1조(계산 방법) 퇴직금의 산출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지급 방법) ① 퇴직금은 퇴직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본인 사망시에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 5 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3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01.09.>

제24조(연봉재심청구) ① 이의 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 시에는 면담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재심을 청구한 자는 인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재심 청구절차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장 보 칙

301 보수규정

- 제25조(단수처리) 연봉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상한다.
- 제26조(비밀유지) 직원의 연봉 자료를 대외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의 제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 제28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제29조(보고의무) 대표이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0조(파견공무원 보수)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에 따른 수당과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8.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9.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9.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5.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1.09.>

301 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6.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8.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1.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6.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 및 <별표6>은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8.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3.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 및 <별표6>은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301 보수규정

직 급 별 기 본 연 봉 한 계 액 표

(단위 : 천원)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대표이사	시장	결정
일반직	1	58,883
	2	45,684
	3	39,551
	4	31,753
	5	26,237
	6	23,863
전문직	가	30,480
	나	27,130
	다	25,651
	마	22,692

301 보수규정

부 가 급 여 지 급 기 준 표

(단위 : 원)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 용 범 위
시간 외 근무수당	· 통상임금/209×1.5×시간 <개정 2012.11.20>	·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3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08.30.> · 시간외 근무는 3급은 월간 최대 10시간 4급 이하는 월간 최대 20시간까지 인정한다. 단 보직자는 시간외 근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08.30.>
휴일 근무수당	· 통상임금/209×1.5×8시간×휴일근무일수 <개정 2012.11.20>	· 복무규정에 의한 휴일에 근무한 4급 이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급방법 등 세부 운영기준은 보수규정 시행내규를 준용한다. <개정 2017.06.01.>
연월차 휴가수당	· 통상임금/209×8시간×미사용일수 <개정 2012.11.20>	· 복무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은 상근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상근 임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학비 보조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상근 임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야간근무 수당	· 통상임금/209×0.5×시간 <개정 2012.11.20>	·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을 받는 야간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야간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주간근무자와 동일한 지급률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직책 또는 직급수당	· 직책수당(매월) 대표이사 : 시장이 결정 대표이사 직무행 : 750,000원 <신설 2018.11.21> 단 장 : 800,000원 <삭제 2018.11.21> 본부장 : 500,000원 <개정 2016.08.30> 팀 장 : 500,000원 <개정 2016.08.30> · 직급수당(매월) <개정 2009.9.23> <일반직> 1급 : 700,000원 <개정 2016.08.30> 2급 : 600,000원 <신설 2009.9.23> <개정 2009.09.23> 3급 : 500,000원 <개정 2012.05.22> <개정 2012.05.22> 4급 : 400,000원 <개정 2014.01.09.> 5급 : 300,000원 <개정 2016.08.30> 6급 : 200,000원 <개정 2016.08.30> <전문직> 가급 : 450,000원 <신설 2016.08.30> 나급 : 350,000원 <신설 2016.08.30> 다급 : 250,000원 <신설 2016.08.30> 라급 : 150,000원 <신설 2016.08.30> 마급 : 100,000원 <신설 2016.08.30>	· 탐장 직무대리서 직책수당 1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4.01.09.> <삭제 2016.08.30.> · 상근 임원과 재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05.22.> <개정 2016.08.30.> · 담당직이사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대행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
특수업무 및 기술수당	· 지급분야 :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 경영평가·법정관리자 등 실무담당 직원 (담당이해) 월 80,000원 <개정 2019.03.00.> · 기술수당 :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회계·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 경영평가 및 법정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실무담당 직원(탐장) 이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3.00.>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파견 근무중인 공무원의 통상임금은 파견 공무원을 재단 직원으로 임용시 산정하는 직급 및 경력을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정한다.

301 보수규정

< 별표 3 > <삭제 2015.10.07.>

< 별표 4 > <삭제 2015.10.07.>

< 별표 5 >

파견 수당 지급 기준

(단위 : 원)

지급대상 (공무원 직급)	파견수당	급량비·여비	지급액 (계)
2-4급	1,000,000	-	1,000,000
5급	500,000	200,000	700,000
6급	300,000	200,000	500,000
7급 이하	200,000	200,000	400,000

301 보수규정

< 별표 6 > 연봉산정표 <신설 2016.08.30.><개정 2017.06.01.><개정 2018.03.30.><개정 2019.03.00.>

신규임용 직급별 연봉산정표

(단위 : 천원)

경력	일반직						전문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1	-	-	-	-	-	23,863	30,480	27,130	25,651	23,330	22,692
2	-	-	-	-	26,237	24,619	31,598	28,106	26,443	24,000	23,177
3	-	-	-	-	27,087	25,375	32,716	29,082	27,235	24,671	23,662
4	-	-	-	31,753	27,936	26,130	33,834	30,059	28,026	25,341	24,147
5	-	-	-	32,768	28,786	26,886	34,952	31,035	28,818	26,012	24,632
6	-	-	-	33,783	29,636	27,642	36,070	32,011	29,610	26,682	25,118
7	-	-	-	34,799	30,485	28,398	37,188	32,987	30,402	27,353	25,603
8	-	-	39,551	35,814	31,335	29,154	38,306	33,964	31,194	28,023	26,088
9	-	45,684	40,720	36,829	32,185	29,909	39,424	34,940	31,985	28,694	26,573
10	-	46,952	41,890	37,844	33,034	30,665	40,542	35,916	32,777	29,364	27,058
11	58,883	48,220	43,059	38,859	33,884	31,421	41,660	36,892	33,569	30,035	27,543
12	60,289	49,488	44,228	39,875	34,734	32,177	42,778	37,869	34,361	30,705	28,028
13	61,695	50,756	45,398	40,890	35,583	32,933	43,896	38,845	35,153	31,376	28,513
14	63,101	52,024	46,567	41,905	36,433	33,688	45,014	39,821	35,944	32,046	28,998
15	64,507	53,292	47,737	42,920	37,283	34,444	46,132	40,797	36,736	32,717	29,483
16	65,913	54,560	48,906	43,935	38,133	35,200	47,250	41,774	37,528	33,387	29,969
17	67,319	55,828	50,075	44,951	38,982	35,956	48,368	42,750	38,320	34,058	30,454
18	68,725	57,096	51,245	45,966	39,832	36,711	49,486	43,726	39,111	34,728	30,939
19	70,131	58,364	52,414	46,981	40,682	37,467	50,604	44,702	39,903	35,399	31,424
20	71,537	59,633	53,583	47,996	41,531	38,223	51,722	45,679	40,695	36,069	31,909
21	72,943	60,901	54,753	49,011	42,381	38,979	52,840	46,655	41,487	36,740	32,394
22	74,349	62,169	55,922	50,026	43,231	39,735	53,958	47,631	42,279	37,410	32,879
23	75,755	63,437	57,091	51,042	44,080	40,490	55,076	48,607	43,070	38,081	33,364
24	77,161	64,705	58,261	52,057	44,930	41,246	56,194	49,584	43,862	38,751	33,849
25	78,567	65,973	59,430	53,072	45,780	42,002	57,312	50,560	44,654	39,422	34,334
26		67,241	60,600	54,087	46,629	42,758	58,430	51,536	45,446	40,092	34,820
27		68,509	61,769	55,102	47,479	43,514	59,548	52,512	46,238	40,763	35,305
28		69,777	62,938	56,118	48,329	44,269	60,666	53,489	47,029	41,433	35,790
29		71,045	64,108	57,133	49,178	45,025	61,784	54,465	47,821	42,104	36,275
30		72,313	65,277	58,148	50,028	45,781	62,902	55,441	48,613	42,774	36,760

※ 공경쟁시험에 따른 신규임용 시 직급별 최대경력인정범위 : 6급(2년), 5급(4년), 4급(8년), 3급(11년)

301 보수규정